# 일본→한국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비즈니스 트랙)

## 일 본

#### 출국전

- 주일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 신청
- 주일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수령(주1)
- 출국 전 72시간이내에 PCR음성확인서를 취득

### 입국시

- 임시격리시설에서 PCR 검사
-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격리면제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 한 국

#### 입국후

- 격리면제기간중 대중교통 사용 불가
- 활동계획서에 따라 숙소와 근무처 왕복 등에 한정
- 격리면제기간 중 능동감시(건강 모니터링 및 매일 통화)

#### 귀국전

-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증명 취득

일 본

#### 귀국시

- 공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질문표공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질문표 (건강상태등) · 서약서 · 일본활동계획서 · 검사증명 제출
- 접촉확인 앱 설치 등

#### 귀국후

- 14일간 대중교통 사용 불가
- 일본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은 자택과 근무처 왕복 등에 한정
-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정보 저장

## 일반적인 입국절차 (레지던스 트랙)

### 일 본

#### 출국전

- 주일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 신청
- 출국 전 72시간이내의 PCR음성확인서를 취득

# 한 국

#### 입국시

- 공항에서 검역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PCR 검사)
- 건강상태질문서·특별검역신고서 제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 입국후

- (공항 검역대에서 발열 등 증상이 없는 경우) 입국후3 일이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
- 14일간 자택 또는 시설에서 격리
- 격리해제 전의 PCR검사
-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주1) 격리면제서는 한국 내 초청기업·단체 등이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www.btsc.or.kr)에 신청.신청 시에 활동계획서 및 격리면제동의서 등을 제출.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만 유효. 대면 수령이 원칙이긴 하나, 사정에 따라서 메일로 수령 가능할 때도 있음.



※대상자가 일본으로 귀국 시에 행동제한이 완화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엔 현행 출입국 조치(공항에서의 PCR검사, 질문표 제출, 14일간 자택 등 대기 및 대중교통 이용금지가 요청됨.) 만이 적용됨.

# 한국→일본

### 비즈니스 트랙

### 출국전

- 주한일본국대사관 \* 총영사관에서 사증 신청. (서약서 • 일본활동계획서 사본을 제출.)
-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증명을 취득
- 민간의료보험 (여행자보험 등) 가입

### 입국시

- 공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질문표 (건강상태 등) •서약서 •일본활동계획서 •검사증명 제출
- 접촉확인 앱 설치 등

한 국

일 본

한 국

### 입국후

- 14일간 대중교통 사용 불가
- 일본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은 숙소와 근무처 왕복 등에 한정
-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정보 저장

### 귀국전

- 주일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수령(\*)
- 출국 전 72시간이내에 PCR음성확인서를 취득

### 귀국시

- 임시격리시설에서 PCR 검사
- 건강상태질문서 · 특별검역신고서 · 격리면제서 · PCR음성확인서를 제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등

### 귀국후

- 격리면제기간 중 대중교통 사용 불가
- 활동계획서에 따라 자택과 근무처 왕복 등에 한정
- 격리면제기간 중 건강 모니터링

## 레지던스 트랙

### 출국전 주한일본국대사관 - 총영사관에서 사증신청 (서약서 사본을 제출)

-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 출국 전 72시간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증명을 취득
- 민간의료보험 (여행자보험 등) 가입

#### 입국시

- 공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질문표 (건강상태 등) 서약서 제출
- (접촉확인 앱 설치 등(권장))

# 입국후

- 14일간 대중교통 사용 불가
- 14일간 자택 등에서 대기
-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정보 저장(권장))
- (\*) 격리면제서는 한국 내 초청기업 단체 등이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www.btsc.or.kr)에 신청. 신청 시에 활동계획서 및 격리면제동의서 등을 제출.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만 유효. 대면으로 수령이 원칙이긴 하나 사정에 따라서 메일로 수령이 가능할 때도 있음.



한국

일 본

※대상자가 한국으로 귀국 시에 격리면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항 등에서의 PCR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14일간 자택 또는 시설에서의 대기가 의무화되고 있음. 또한, 격리해제 전에도 PCR검사를 실시.